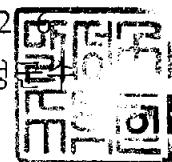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816
------------	-----

제출일자 : 2012

제 출 자 : 달성군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따라 기존 청소년센터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련시설 전체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제명변경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나. 청소년“센터” 관련 조항을 청소년“수련시설”로 개정
- 다. 문화의 집 사용허가 및 사용료, 위탁운영 등 개정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8조,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1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 다. 기타사항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2)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4)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2. 5. 21 ~ 2012. 6. 11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따라”로, “청소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청소년수련시설”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청소년”이라 함은”을 ““청소년”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청소년수련활동”이라 함은”을 ““청소년수련활동”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청소년단체”라 함은”을 ““청소년단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사용료”라 함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사용료”란은 제3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강습료”란 제3조에 따른 시설을 이용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에서 개설한 강좌에 수강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2항의 “센터”를 “청소년 센터”

로 한다.

① 청소년 수련시설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센터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남리 논공로 252
2. 청소년 문화의 집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 220길 6-3

같은 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청소년 문화의 집에는 실내집회장, 자치활동실, 강의실 등을 둘 수 있다.

제4조제1항 중 “센터는”을 “수련시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센터”를 “수련시설”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센터”를 “수련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센터”를 “수련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센터”를 “수련시설”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센터”를 각각 “수련시설”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센터”를 “수련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센터”를 “수련시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센터”를 “수련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센터를”을 “수련시설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센터 시설”을 “수련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의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12조제2항제8호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수련관”을 “수련시설”로 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를”을
“제2항에 따라 수련시설을”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이하“위탁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이하“위탁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센터”를 “수련시설”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센터”를 “수련시설”로,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센터”를
“제2항에 따라 수련시설”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센터”를 “수련시설”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8조에 따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센터”를 “수련시설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센터”를 각각 “수련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 중 “센터를”을 “수련시설을”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는 센터를”을 “제5조에 따른 사무는 수련시설을”로 한다.

제24조 중 “「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 「달성군 재무회계규칙」”을 “「대구광역시 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를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설 사용료

구 分	기준	금 액		비 고
		청소년	일반	
헬스장	1인/1월	15,000	30,000	마이크 2개
강당	오전	20,000	40,000	
	오후	25,000	50,000	
	야간	30,000	60,000	
체육관	오전	30,000	60,000	
	오후	50,000	100,000	
	야간	70,000	140,000	
인공암벽장	1인/월	20,000	30,000	1일 2시간
	1인/일	3,000	6,000	2시간
야외공연장	오전	35,000	50,000	
	오후	50,000	70,000	
	야간	70,000	100,000	
음악연습실	2시간	10,000	20,000	
강의실	1회	15,000	25,000	

2. 부속설비 사용료

구 分	기준	금 액		비 고
		청소년	일반	
빔프로젝트	1회	15,000	30,000	
조명(무빙라이트)	1회	20,000	30,000	
냉·난방	강당 1회	55,000	80,000	
	강의실 1회	15,000	30,000	
노트북	1회	15,000	30,000	
음향(추가마이크)	1회	5,000	10,000	기본외 개당

3. 시간구분

구분	시간	비 고
오전	09:00 ~ 12:00	
오후	13:00 ~ 17:00	
야간	18:00 ~ 21:00	공휴일은 운영안함

※ 토·일요일, 공휴일에 이용하는 일반인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 이용료의 30%를 가산함

※ 허가된 이용시간보다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다음 회 이용료 전액을 가산함

신 · 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복지 증진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달성군 청소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년”이라 함은 9세이상 24세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수련활동”이라 함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3.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p>제1조(목적) --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 ----- ----- 청소년수련시설-----.</p> <p>제2조(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년” 이란 ----- -----. 2. “청소년수련활동” 이란 ----- ----- ----- ----- -----. 3. “청소년단체” 란 ----- ----- ----- . 4. “사용료” 란은 제3조에 따른 ----- -----.

<p>5. “강습료” 라 함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이용하여 센터에서 개설한 강좌에 수강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p>	<p>5. “강습료”란 제3조에 따른 시설을 이용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에서 개설한 강좌에 수강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p>
<p>제3조(위치 및 시설) ①센터는 논공을 날리 717-8번지에 둔다.</p>	<p>제3조(위치 및 시설) ① 청소년 수련시설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p>
<p>② 센터에는 실내집회장, 체육활동장, 자치활동실, 특성화수련활동장, 상담실 등을 둘 수 있다.</p>	<p>1. 청소년 센터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날리 논공로 252번지 2. 청소년 문화의 집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 220길 6-3</p>
<p><신 설></p>	<p>② 청소년 센터----- ----- -----.</p>
<p>제4조(관리 · 운영) ①센터는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 · 운영한다.</p>	<p>③ 청소년 문화의 집에는 실내집회장, 자치활동실, 강의실 등을 둘 수 있다.</p>
<p>②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 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다</p>	<p>제4조(관리 · 운영) ① 수련시설은----- -----.</p>
<p>제5조(업무)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② ----- 수련시설----- -----.</p>
<p>1. 센터에 대한 종합운영계획의 수립 2. ~ 4. (생 략) 5. 청소년과 가족 등 센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무료 순환버스 운영</p>	<p>제5조(업무) 수련시설----- -----. 1. 수련시설----- ----- 2. ~ 4. (현행과 같음) 5. ----- 수련시설 ----- -----.</p>

<p>6. (생 략)</p> <p>제6조(사용자의 범위) ① <u>센터</u>의 이용 또는 사용대상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와 같다.</p>	<p>6. (현행과 같음)</p> <p>제6조(사용자의 범위) ① <u>수련시설</u>----- ----- -----.</p>
<p>1. · 2. (생 략)</p> <p>② 군수는 <u>센터</u>의 상시이용시설에 대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② ----- <u>수련시설</u>----- ----- -----.</p>
<p>제7조(사용시간 등) ① <u>센터</u>의 사용시간은 09: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사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7조(사용시간 등) ① <u>수련시설</u>----- ----- -----. ----- ----- -----.</p>
<p>② <u>센터</u>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u>센터</u>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임시 휴관할 수 있다.</p>	<p>② <u>수련시설</u>----- -----. ----- <u>수련시설</u>----- ----- -----.</p>
<p>1. · 2. (생 략)</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단서에 의하여 별도의 사용시간을 정한 때와 임시 휴관하는 때에는 사용자 등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③ ----- 따라 ----- ----- ----- ----- -----.</p>
<p>제8조(사용허가) ① <u>센터</u>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p>	<p>제8조(사용허가) ① <u>수련시설</u>을----- ----- -----.</p>

<p>다만, 군수가 사용권, 관람권을 빌매하거나 또는 무료 사용 시설물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다.</p>	<p>-----. -----. -----.</p>
<p>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은 사용개시 7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u></p>	<p>② <u>제1항에 따른 -----.</u> -----.</p>
<p>③ · ④ (생 략)</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10조(사용허가 취소) ① (생 략)</p>	<p>제10조(사용허가 취소)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군수는 이를 책임지지 않는다.</u></p>	<p>② <u>제1항에 따른 -----.</u> -----.</p>
<p>제11조(사용료 등) ① 군수는 <u>센터 시설</u>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강습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제11조(사용료 등) ① ----- <u>수련시설</u>- -----.</p>
<p>② <u>제1항에 의한 사용료 및 강습료의 범위는 별표와 같으며, 허가시에는 징수한다.</u></p>	<p>② ----- <u>따른 -----.</u> -----.</p>
<p>제12조(사용료 면제 및 감면) ① (생 략)</p>	<p>제12조(사용료 면제 및 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②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50퍼센트를 감면 할 수 있다.</p>	<p>② ----- -----.</p>
<p>1. ~ 7. (생 략)</p>	<p>1. ~ 7. (현행과 같음)</p>
<p>8. 「<u>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u>」에 의한 참전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p>	<p>8. 「<u>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p>
<p>9. (생 략)</p>	<p>9. (현행과 같음)</p>

<p>③ (생 략)</p> <p>제14조(손해배상) ① (생 략)</p> <p>②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u>수련관</u>의 시설을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배상 하여야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4조(손해배상) ① (현행과 같음)</p> <p>② _____ ---- <u>수련시설</u>----- ----- -----.</p>
<p>③ (생 략)</p> <p>제15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제4조 <u>제2항</u>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이하 “위탁조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설립한 법인 중 청소년 보호·복지·활동지원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우선 위탁 할 수 있다.</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5조(위탁운영) ① _____ <u>제2항</u>에 따라 수련시설을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이하 “위탁조례” ----- -----. ----- ----- -----.</p>
<p>② (생 략)</p> <p>③ <u>센터</u>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설립한 법인 중 청소년 보호·복지·활동지원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위탁기간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수련시설</u>----- ----- -----. ----- ----- -----.</p>
<p>④ (생 략)</p> <p>제16조(운영지원) ① 군수는 <u>센터</u>의 운영을 위탁한 수탁자에게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u>제2항</u>의 규정에 의거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6조(운영지원) ① ----- <u>수련시설</u>----- ----- ----- <u>제2항</u>에 따라 <u>수련시설</u>-----</p>

<p>예산의 <u>범위</u>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② (생 략)</p> <p>제17조(수탁자의 의무) <u>센터</u>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p> <p>1. ~ 6. (생 략)</p> <p>제19조(반환 및 기부채납) ①수탁자는 <u>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u>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그 밖의 재산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p> <p>② (생 략)</p> <p>제20조(회계 및 결산) ①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다음연도의 <u>센터</u>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군수는 <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u>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받은 때에는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수탁자에게 승인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생 략)</p> <p>제21조(지도 · 감독) ①군수는 <u>센터</u>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u>센터</u>의 운영상황 및 주요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지도 · 감독을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p>	<p>----- <u>범위</u>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7조(수탁자의 의무) <u>수련시설</u>----- ----- -----.</p> <p>1. ~ 6. (현행과 같음)</p> <p>제19조(반환 및 기부채납) ①----- <u>제18조에 따라</u>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0조(회계 및 결산) ①----- ----- <u>수련시설의</u> ----- -----.</p> <p>②----- <u>제1항에 따른</u> -----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21조(지도 · 감독) ①----- <u>수련시설</u>----- ----- <u>수련시설</u>----- ----- ----- -----.</p>
--	--

<p>② (생 략)</p> <p>③ 군수는 <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u>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업무를 태만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이의 시정을 문서로 명령할 수 있다.</p> <p>④ <u>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u> 명령을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u>제23조(권한의 위임 · 위탁)</u> 군수는 센터를 위탁 · 운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는 센터를 위탁받은 수탁자에게 위임된 것으로 본다.</p> <p><u>제24조(준용)</u>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기본법」 · 「청소년활동진흥법」 · 「청소년복지지원법」 · 「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 「달성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p> <p><u>제25조(시행규칙)</u>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제1항에 따라</u> ----- ----- -----.</p> <p>④ <u>제3항에 따른</u> ----- ----- -----.</p> <p><u>제22조(권한의 위임 · 위탁)</u> ----- 수련시설을 ----- ----- <u>제5조에 따른</u> 사무는 수련시설을 ----- -----.</p> <p><u>제23조(준용)</u> ----- ----- ----- 「대구광역시 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규칙」 ----- -----.</p> <p><u>제24조(시행규칙)</u> ----- -----</p>
---	---

참고 1**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청소년 기본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1. 국가는 2 이상의 시·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각각 제10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3.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제10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4.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제1호 라목 내지 바목에 의한 청소년 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③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규모의 부지변경, 건축연면적의 증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